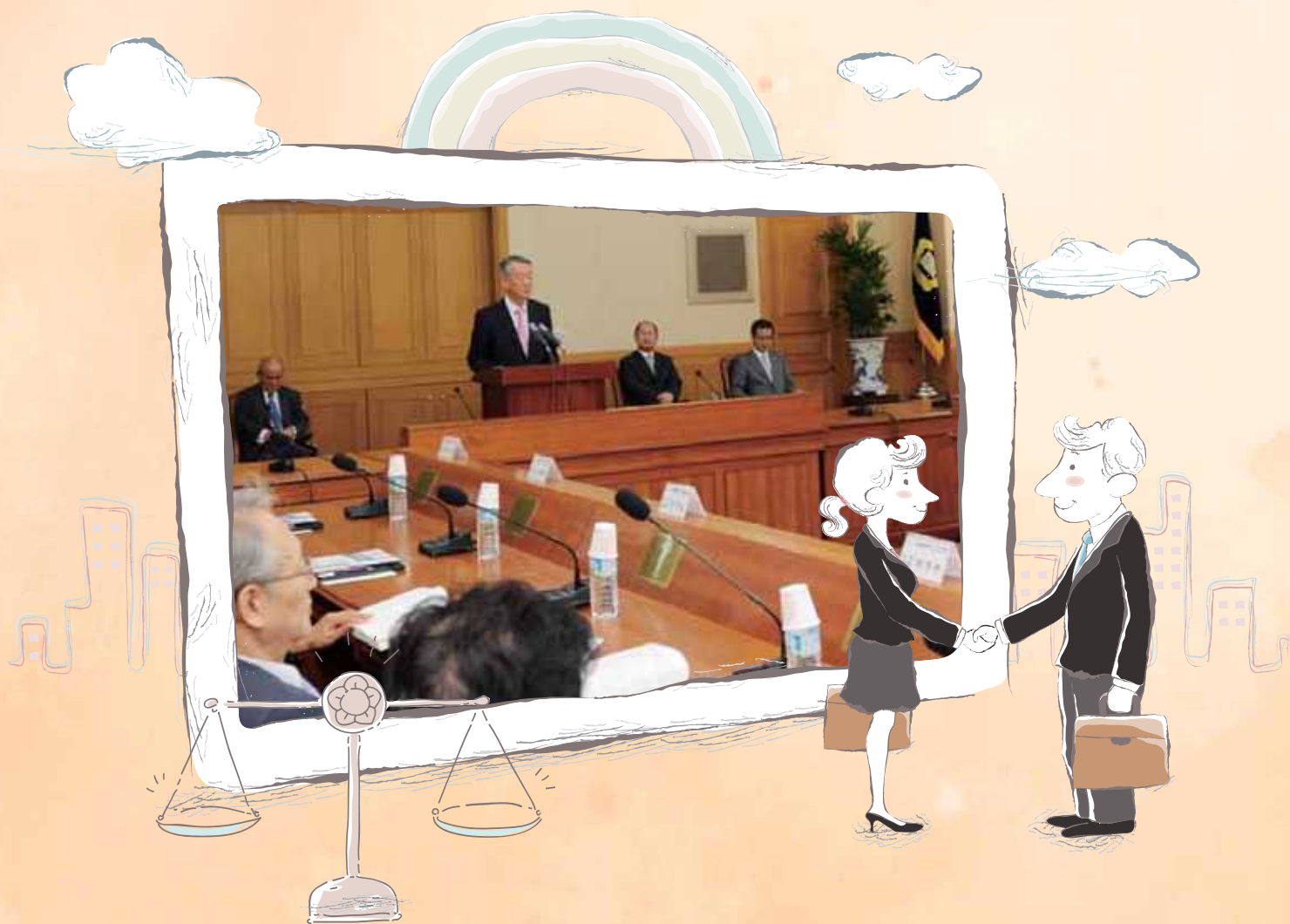


언론 사람

언론중재위원회 NEWS (구 PAC News)

www.pac.or.kr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도와 드립니다



Special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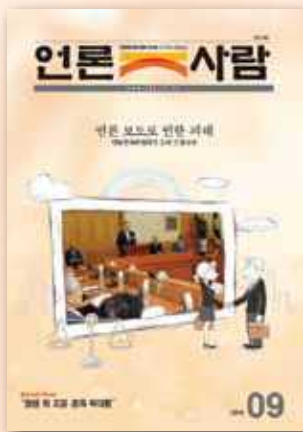
“법원 밖 조정·중재 확대를”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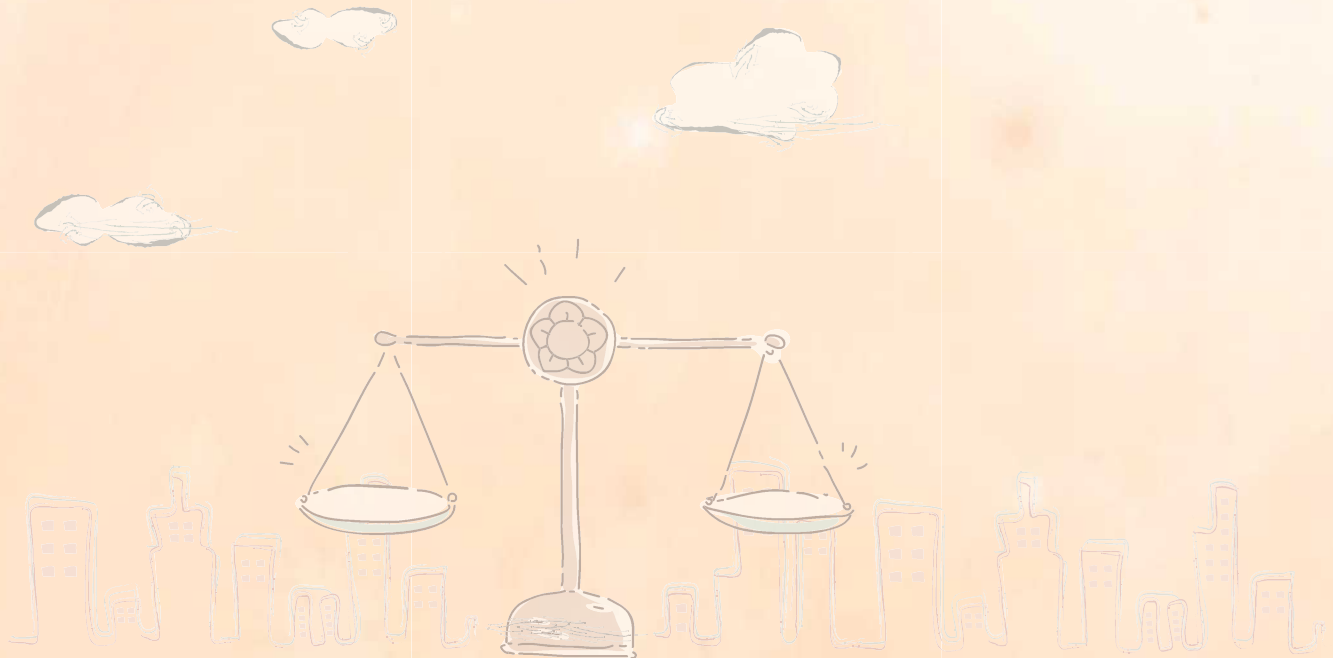
09

CONTENTS

2010. September. Vol 123



- 03 이달의 주요뉴스 "법원 박 조정 · 중재 확대를"
- 04 인터뷰 "기여하는 삶이 즐거운 삶입니다"
(박석태 전 경인일보 논설위원)
- 06 위원단상 인권보호를 생각하는 언론자유가 아쉽다 (김덕모 위원)
- 07 직원마당 "귀하를 위원회 홍보대사로 임명합니다" (예산회계팀 윤치경)
- 08 상담후기 여배우 이야기 (구울화 법무상담팀장 변호사)
- 09 백승찬의 영화세상 영웅본색과 무적자
- 10 이런얘기 저런얘기 강강술래 (김문성 법무상담팀 차장)
- 11기고 '언론중재(言論仲裁)'에 대한 단상 (부산보훈병원 한방과장 김성수)
- 12 위원회 소식
- 13 사건 처리현황
- 14 위원동정



“법원 밖 조정·중재 확대를”

권 성 위원장, 민사조정법 시행 20주년 학술대회 축사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언론중재위원회 권 성 위원장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주최한 민사조정법 시행 2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 1985년 법원 송무국장으로 재임할 때 판사들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원내 조정에 관한 일반법인 민사조정법의 법안을 마련, 입법을 적극 추진한 바 있다.

권 위원장은 축사에서 “현재 법원 소송사건 중 약 37%가 조정이나 화해로 해결되고 있을 정도로 법원 내 조정이 활성화 되어 민사조정법 제정 작업에 처음 관여 하였던 저로서는 커다란 보람을 느낀다”며 “법원은 절감된 시간과 노력을 재판 심리에 집중함으로써 신속·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당사자들도 분쟁을 재판이 아닌 조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식이 확산됨으로써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토대가 굳건해진다는 점도 중요한 소득”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그 동안 법원 내에서 조정에 의한 분쟁 해결이 뿌리를 내리고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면 이제는 법원 밖에서 하는 조정과 중재를 확대함으로써 판사들의 재판 부담을 더욱 줄여나가야 한다”며 대표적인 ADR 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1,500여 건의 조정·중재사건을 접수 처리했음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언론분쟁에 관한 소송을 법원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각급 법원 판사 및 서울과 부산 법원조정센터 관계자, 민사소송법 교수 등이 대거 참여했으며, “ADR의 세계적 동향”, “민사조정의 발전 경과”, “민사조정의 전망과 과제” 등 3개 세션으로 나뉘 진행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 양재규 변호사(조사팀장)는 제3세션 토론자로 참석했다.(관련기사 12면)

여운규 차장(홍보팀)

인터뷰 - 박석태 전 경인일보 논설위원

“기여하는 삶이 즐거운

박석태

전 경인일보 논설위원

- 경인일보 논설위원 겸 편집부국장
- 한국케이블TV 수원방송
 보도제작국장
- 경기언론인장학회 이사(현)
- 수원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현)
- 수원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현)
-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 위원
(2006. 11. ~ 2009. 8.)



박석태 전 경인일보 논설위원은 평생동안 지역 언론발전을 위해 공헌한 언론인이며, 언론중재위원으로 재직할 때에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자세로 조정·중재에 임하고 중재위원회 홍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박 전 위원은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기여하는 삶을 강조했다.

〈편집자 주〉

경기지역에서 언론인으로서 오랫동안 활동하셨습니다. 언론인의 역할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언론인은 존경과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의롭고 양심적이며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헌신 봉사의 자세로 한 시대에 충실하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책임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은 우리 사회의 중심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책임 있는 언론인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언론계에 투신하신 계기가 있습니까?

대학 시절에 학보사 기사를 했었고, 글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정의를 지켜가겠다는 생각을 했고, 언론인이 되면 그러한 것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언론이 사회를 감시 감독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어렵고 소외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선 기자일 때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이 정책을 반영시켰던 것보다 가슴에 남고 더 보람이 있었습니다.

중앙지와 구별되는 경인지역 언론의 특색은 무엇입니까?

경기 인천지역의 인구가 1,400만 정도 됩니다. 그만큼 시장이 크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 지역은 정서적인 공동체 의식과 동질적인 성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역지가 시장을 파고 들어가기에는 힘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역성만을 강조하기에도 무리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중앙지와 경쟁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삽입니다”

언론인으로 활동하실 때와 중재위원으로 계실 때 언론을 보는 느낌은 어떻게 다르던가요?

현직에서 데스크를 할 때 언론중재위원회에 피신청인 자격으로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 당황스럽기도 했고… (웃음) 중재위원을 하면서는 안타까운 느낌이 많았습니다.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것은 책임의식 아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가 현직에 있을때 얼마나 책임의식을 갖고 임했는지에 대해 회의가 들더군요.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소임을 다 해야 하지만 시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언론사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며 참언론의 자세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중재위원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재위원으로 활동하실 때 생각하신 조정·중재의 의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조정이나 중재과정에서 어느 한 쪽이라도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상생의 원리를 적용해야죠.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조정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객관성과 진실성에 기반하되, 대립하고 있는 당사자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갖고 대해야 합니다. 함께 이기는 타협을 이뤄내기 위해 중재위원들이 친절하고 겸손한 조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때 감동과 감화에 기반한 조정·중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서로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조정과 중재의 진정한 의미라고 믿습니다.

위원님께서 중재위 재임시절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셨고, 특히 지역사회에 중재위원회를 알리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중재위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론중재위원으로 일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책무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런 것에 감사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아직도 지역사회에는 홍보가 되어 있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무처 직원들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중재위원들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자신의 위상에 걸맞은 활약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재위원 퇴임 후의 근황은 어떻습니까?

최근 법원의 가사조정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이혼사건 등 부부간의 가장 은밀하고 첨예한 문제가 많고, 주로 사회의 그늘지고 척박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다 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사회 안전망으로 작동해서 사회를 건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나름 잘 해낼 수 있는 것도 언론중재위원으로 일했던 경험 덕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하우를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이루지 못한 일은 많지만, 욕심을 다 버리고 다 내려 놔습니다. 다만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 지원하고 돕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기여하는 삶이 건강하고 즐거운 삶이니깐요.

인터뷰. 사진 / 여운규 차장(홍보팀)

인권보호를 생각하는 언론자유가 아쉽다



김덕모 위원
(광주중재부, 호남대 신방과 교수)

언론중재위원으로 활동한 지 1년째를 맞으면서 새삼 언론의 자유와 인권의 문제를 생각해 본다. 광주중재부에 접수된 많은 사건들 중 상당수가 개인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언론보도라고 생각된다.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위임받은 언론자유라는 특권을 누리면서 정보를 수집, 출판, 전파하는 취재보도 행위를 한다. 현대 사회는 복잡 다양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론의 취재보도 활동을 통해서 공적 정보에 접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알권리와 표현할 권리가 충족되며 여론의 창출도 가능케 된다.

언론자유가 보장되어야만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무의식에서 출발해야 하고, 바르게 알려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더군다나 언론보도에 의한 개인의 권리 침해는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가 절실한 실정이다.

사상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아무리 본질적이고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타인의 자유를 무제한 침해할 수 없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헌법도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이 공표하는 보도의 한계는 기본법인 헌법과 여러 법률 그리고 언론계 스스로가 제정한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보도기준 등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 중재신청된 사건들을 보면 언론의 신중하지 못한 보도로 인한 것들이 많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기자들이 왕왕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은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객관성’과 ‘공정성’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본원칙 준수와 “반드시 확인을 거치라”는 교훈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 즉 오보는 첫째, 언론 산업의 속성에서 생기는 원인 둘째, 기사의 취재에서 전달과정, 즉 게이트 키퍼 과정에서 생기는 원인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언론 산업의 속성상 마감시간과 경쟁 매체와의 지나친 경쟁, 시청률 경쟁등 언론환경의 변화와 상업주의적 요인들이 오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자의 심리상태(선입견, 편견, 조급성, 일반적 혹은 단정적 감정 등), 기자의 경험미숙, 기자의 전문지식 결여, 고소장, 고발장, 경찰조서 등을 확인 하지 않고 보도하는 경우 등에 의해 오보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오보가 발생했을 때 언론의 대처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명백한 오보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정보도를 해 주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에 상응한 손해배상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언론은 정정보도에는 인색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언론이 신청인의 반론보도 요청에는 비교적 잘 응하고 있어 많은 사건들이 신청인의 반론보도문을 실어주는 것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 방식도 결국 ‘사후약방문’이라는 한계가 있다.

언론보도에 의한 인권침해는 그 파급효과가 치명적이고 원상회복이 여의치 않으므로 가능하면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절실하다. 그런 점에서 취재보도시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도록 언론인의 윤리의식 제고(각 사의 윤리강령, 취재 수칙 등의 강화) 및 기자의 전문성 제고(언론인 연수 및 재교육 강화 등을 통한 취재수칙 및 법률관계 등의 숙지), 인권침해 보도를 줄일 수 있는 사내 제도적 장치의 활용(옴부즈맨 제도, 변호사 기사 사전 열람제 등) 등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귀하를 위원회 홍보대사로 임명합니다”

- 직원 해외 실무연수 후기

첫 방문지인 런던의 한국 민박집 주인은 물었다. “두 분은 영국에 여행 오신 건가요?”

“회사 일 때문에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떤 회사 다니세요?”

“언론중재위원회 다닙니다.”

민박집主人的 태도가 달라졌다. 그냥 일반 무역회사 직원이겠거니 하다가 회사이름을 듣고 깜짝 놀란 모양이다. 그리고 재차 이렇게 질문했다.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가 뭐하는 곳이지요?”

언론중재위원회를 알긴 알지만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는 눈치다. “저희 위원회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연수를 위해 준비해왔던 내용들 중의 일부를 주저리주저리 읊어내며 ‘앞으로 유럽 4개국(영국,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을 다니며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했다.

비록 유럽에 산다고는 하지만 한국 사람인 민박집 주인도 우리 위원회를 정확히는 모르고 있는데, 유럽인들이 한국의 언론중재위원회를 들어본 적이나 있겠는가. 그들의 지식 범위엔 “KOREA” 하면, “North? South?” 정도의 질문이 돌아오거나 월드컵 축구 이야기나 겨우 한 마디 내던질 정도니 말이다. 어찌 됐든 그리하여 우리는 아무도 주지 않은 ‘언론중재위원회 홍보대사’ 임명장을 가슴에 품고 ‘언론중재위원회 제대로 알리기’를 연수 목적에 추가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첫 방문 기관이었던 영국 언론불만처리위원회(PCC)에서 만난 William Gore 씨가 우리 위원회를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미리 보내준 홍보책자를 통해 스티디를 했다고 한다. 그는 영국의 언론 현황과 PCC의 기능을 ‘영국인답게’ 자신만만하게 설명을 하고 나선 언론중재위원회 이야기를 더 해달라고 한다. 위원회 근거법률, 처리실적, 프로세스 등을 자세히 설명해줬더니,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다. 뭐랄까, 부러움과 함께 질서어린 눈빛이랄까. 작년 한해 1,500여건을 처리하고, 제도가 정착되어 국민들과 언론인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는 설명엔 “Really?”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 때 느낀 언론중재위원회 직원으로서 뿌듯함은 한 달에 월급을 두 번 받은 것과 같은 벅찬 감정이었다.

영국에 이어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의 기관을 방문할 때도 비슷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들 모두의 일관된 반응은 “Oh! Really?”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공세였다. 주객이 전도되어 우리 연수자가 질문을 받고 설명을 해주는 입장이 된 것이다. 스페인 까탈루냐 언론평의회 Lluvia Olivia 사무총장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성장 배경에 대해 궁금해 했다. 스페인이나 한국이나 독재정권으로부터 벗어난 지 얼마 안되는 비슷한 역사임에도 언론피해구제제도는 질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기에 의아한 모양이었다. 그 질문에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우리 위원회도 설립 초기에는 규모가 작았고, 처리 사건 수도 많지 않았지만, 점차 기능도 확대되고, 조직 규모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렇게 한 달이라는 긴 시간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쏠살같이 지나갔다. 현지 도착 첫날 시차적응이 안되어 밤잠을 설쳤던 것을 빼곤 밤마다 꿈아 떨어졌을 정도로 많이 걷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외국에 가면 절로 애국자가 된다고 했다가. 이번 해외 실무연수는 자칭 ‘위원회 홍보대사’로서의 애사심을 가슴 가득 품을 수 있는 기회였다. 우리 위원회야말로 유럽 그 어떤 나라의 언론피해구제기구보다 공정하고 편리하게 국민과 언론의 갈등을 해결 해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 제도에 대한 지나친 과찬일까.



윤치경
(예산회계팀)

여배우 이야기

구유헌(법무상담팀장, 변호사)

그날의 “여보세요”라는 첫 마디는 좀 특별했다. 약간 흐느끼면서 떨리는 목소리. 다년간의 법무상담팀 근무 경력으로 볼 때, 이런 경우 두 가지 중 하나다. 아주 중차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우리 팀 최대의 난적 ‘전파 장애자’이거나. 다행히도 이 경우는 전자였다. 여배우의 노출을 내세워 꽤 흥행을 거둔 유명 연극의 여주인공. 그녀는 기획사의 요청으로 연극 홍보용 누드 사진을 수 차례 촬영했다. 하지만 도저히 노출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도중하차했으며 주연배우도 교체되었는데, 그 후에도 각종 매체가 앞 다투어 그녀의 누드 사진을 싣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검색해보니 과연 좀 심하다 싶을 정도의 누드 사진이 다수 인터넷 매체에 보도되고 있었다. 노출 스트레스 때문에 도중하차한 사람에게 잔인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같은 여성으로서 어떻게든 꼭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직접 사진을 삭제할 수는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다만 연극 출연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누드 사진을 게재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심리 과정 또는 그 전 단계에서 언론사와 협의를 통해 사진이 삭제될 수도 있다고 말하자, 그녀는 한번 해보겠노라고 의지를 보였다.

그 후 이틀간은 그야말로 ‘누드와의 전쟁’이었다. 그녀와 나란히 앉아 인터넷 상의 수많은 사진을 검색하며 확인 작업을 거친 끝에 50여 건을 추려냈다. 구술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녀는 그 동안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절망한 나머지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전화해보았다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아름다운 얼굴을 거의 다 가리다시피 한 걸 보니 얼마나 세상을 두려워하는지 한눈에 느껴졌다.

결과는 해피엔딩. 모든 언론사가 취하를 조건으로 사진을 삭제했다. 취하서를 내기 위해 다시 한번 위원회를 방문한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거듭했고, 한결 밝아진 그녀의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었다. 최근 인터넷 뉴스 한켠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고 있으며 새출발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개명까지 했다는 소식이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더 이상 얼굴을 가리지 않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기사 내용에는 어려울 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도움을 받았노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고, 나로서는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그녀의 마음이 참 감사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딱 한 걸음이라고 한다. 한 걸음만 내딛으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나, 처음 그 한 걸음이 어려운 법이라고. 부디 언론중재위원회가 그녀의 첫 한 걸음이었기를. 앞으로 그녀가 걸어가게 될 길이 순탄하고 무탈하기를 바래본다.



백승찬의 영화세상

영웅본색과 무적자

〈영웅본색〉은 1980년대 홍콩 영화를 대표하는 작품이었다. 3편까지 이어진 이 영화는 감독 오우삼의 이름을 홍콩 바깥으로 알렸고, 배우 주윤발을 스타로 만들었다. 한국에서는 개봉 당시에 그다지 빛을 보지 못했으나, 재개봉판을 거치면서 입소문이 퍼져 관객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트렌치 코트를 입은 채, 이쑤시개를 물고 쌍권총을 쓰는 주윤발의 모습은 한국의 젊은 남성 관객을 순식간에 사로잡았다.

추석을 앞두고 개봉한 〈무적자〉(감독 송해성)는 〈영웅본색〉의 리메이크작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리메이크 제의가 있었으나, 오우삼은 이번에 처음으로 허락했다. 오우삼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영웅본색〉을 그저 액션영화로 치부했지만, 한국에서는 정서적으로 접근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무적자〉는 〈영웅본색〉보다 사람 사이의 감정에 더 파고들려는 모습을 보인다. 1980년대 홍콩을 2000년대 한국으로 옮겨오면서

바뀐 설정도 있다. 김혁(주진모)은 탈북하면서 동생 철(김강우)과 어머니를 남겨두고 떠나온데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다. 혁은 함께 탈북한 동료 이영춘(송승헌)과 함께 남한을 거점으로 하는 무기 밀매 조직을 이끌고 있다. 뒤늦게 탈북한 철은 형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남으로 들어온다. 철은 경찰이 돼 무기 밀매 조직을 잡으려 한다. 혁과 영춘은 한때 부하였던 정태민(조한선)에게 배신당해 조직으로부터 밀려난다.

〈무적자〉는 혁과 철 형제의 애증을 묘사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원작을 본 관객은 극중 주윤발의 ‘의리’를 오래 기억할테지만, 〈무적자〉의 관객은 주진모와 김강우의 ‘우애’를 느낄 듯하다. 원작에서 형제의 갈등은 범죄자와 경찰이라는 엇갈린 직업에 기인했지만, 〈무적자〉에선 직업 외에도 ‘탈북자’라는 요소가 추가됐다. 같은 민족이라고는 하지만 의지할 사람은 없는 남한 땅에서 아등바등 살아남으려는 탈북자의 정서가 〈무적자〉의 이야기를 추동하는 한 근원이다.



▲무적자(위, 가운데)와 영웅본색(아래)의 한 장면

주윤발이 〈영웅본색〉에 출연한 것은 그의 나이 31세 때였다. 송승헌이 〈무적자〉에 출연한 시점보다 3년이 젊다. 그럼에도 〈영웅본색〉의 주윤발은 〈무적자〉의 송승헌보다 더 원숙하고 중후해 보인다. 오우삼은 영화 개봉을 앞두고 내한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송승헌이 주윤발보다 조금 더 귀엽게 표현된 것 같다. 주윤발은 남성적이면서 영웅적인 모습으로 매우 강렬했지만, 송승헌의 경우 좀 더 현대적이고 발랄하며 활발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무적자〉를 처음 봤을 때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렸다”면서 “내가 하지 못한 부분을 송해성 감독이 잘 해준 것 같다”고 칭찬했다.

송해성 감독은 “80년대 학교를 다닌 386 세대 입장에서 모든 영화를 다 봤다고 할 수 있다. 시발점이 됐던 영화는 〈영웅본색〉이었다”며 “80년대 영화를 공부하던 세대들이 유럽 영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영웅본색〉은 홍콩영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오우삼은 9월초 열린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평생공로상을 받았고, 이때 〈무적자〉가 국내보다 먼저 상영되기도 했다.

그러나 〈무적자〉에 대한 국내 언론과 평단의 반응은 엇갈렸다. 남자들의 의리, 우애를 유려한 화면에 담아냈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영화가 다루고 있는 감정이 구태의연하다는 평도 많았다. 우정, 의리 등은 보편적인 가치지만, 시대에 따라 표현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형제가 포옹한 채 눈물을 흘리는 장면만으로 우애를 표현하기는 힘들다.

한국에서도 옛 인기작을 리메이크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고 있다. 올해 칸 국제영화제에 출품된 〈하녀〉가 대표적이고,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만추〉도 이만희 감독의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이다. 〈무적자〉는 리메이크를 하면서 원작의 정서를 얼마만큼 되살리는 것이 적당한지 숙제를 남겨왔다.

(경향신문 문화부 기자)

강강술래

문화재청 홈페이지



삼남지방(경상, 전라, 충청) 해안가에서 유년을 보낸 사람들이라면 한가위날 저녁에 마을 어귀에 모여 동네 사람들과 손을 잡고 원을 돌며 노래를 부르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전라도와 충청도에선 '강강술래'라고 하며, 경상도에선 '쾌지나칭칭 나네' 또는 경북 영덕지방에서는 '월월이청청'이라고 하는데, 처음엔 느린 노래에 맞춰 느린 원을 만들며 돌다가, 노래가 점점 빨라지면 원을 그리는 속도도 빨라지고, 손을 놓아 선을 만들다가 다시 원을 만들고 나중에는 문을 만들어 그 사이로 대열이 통과하며 끝을 맺는다. 지금은 이 놀이를 하는 사람도 지역도 많지 않은데, 다만 해남과 진도에서는 아직도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희소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아 중요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었고, 지난해에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강강술래나 월월이청청, 쾌지나칭칭 나네는 알고 보면 가사만 서로 다를 뿐, 다 같은 노래이다. 셋 다 느린 음악으로 시작해 자진모리로 몰아가며, 노래 중간 중간 그 지역 토속민요, 예를 들면 '청어엿자', '고사리 꺾자' 같은 소리를 넣어 메들리처럼 이어 부른다는 공통점이 있다. 무엇보다 이 셋은 하나 같이 일본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꼭 닮았다.

강강술래를 '강강수월래(强羌水越來)' 즉 '강한 오랑캐가 물 건너 왔다'로 보기도 하며, 술래를 '순라(巡邏)'로 해석해 '일본군의 움직임을 잘 관찰하며 경계하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월월이청청은 '越越而清正' 즉 '왜장 가토 기요마사가 지나가네'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며, 쾌지나칭칭은 '快哉라 清正이 나네' 즉 '좋구나, 왜장 기요마사가 나가네'로 해석하기도 한다. 어쨌든 이들 노래의 기저에는 조선을 침노한 일본을 경계하라는 메시지가 깔려있어, 후세사람들에게는 훌륭한 교훈이자 참요(讖語)로서 기능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꼭 100년 전인 1910년 음력 7월 25일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는 치욕을 겪었다. 그리고 이십일 후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맞았다. 매스컴이 발달되지 않은 시절이라 삼남의 시민들 상당수는 나라 잃은 사실조차 모른 채 추석을 맞아 강강술래를 했을지도 모르겠다. 오랑캐는 이미 물을 건너 왔는데 말이다.

김문성 (법무상담팀 차장 / 국악 칼럼니스트)

BOOK

이 달에 들어온 책

임 미 숙 (정책연구팀)

뉴스크리틱, 100편의 진단서

김재동 지음 | 커뮤니케이션북스 | 283페이지



왜 얼굴을 가린 영상이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것일까? 뉴스 영상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호평을 받는 것일까? 이 책은 영상과 기사, 그래픽과 분장, 의상 등 TV뉴스 방송의 모든 영역에서 엄선한 100편의 진단서로서, YTN의 실제 방송 영상을 통해 생생한 현장 노하우를 익힐 수 있다.

저자는 영상리포트를와 영상 자료의 활용과 편집을 먼저 정리한 다음 실험적인 뉴스 형식, 초상권 침해와 간접광고 등 방송심의 규정 위반 사례, 잘못된 대담의 구성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 모델을 분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 책에서 다루는 뉴스 영상은 블로그(<http://blog.naver.com/commbooks>)에도 공개하고 있다. 뉴스를 제작하는 실무자는 물론 현장 경험이 일천한 예비 저널리스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언론중재(言論仲裁)’에 대한 단상

‘언론(言論)’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아마도 말과 글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뜻을 밝히는 일이 아닐까 싶다. 동양 최고의 고전 주역(周易)의 간괘를 보면 “사람이 마땅히 신중하고 그쳐야 될 것은 오직 말과 행동이다(人之所當慎而止者 唯言行也)”하여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명심보감 정기편(正己篇)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타인을 해아리고자 한다면 먼저 스스로를 반드시 해아려라. 남을 해치는 말은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니 피를 머금어 남에게 뱉으면 먼저 자기의 입이 더러워진다(欲量他人 先須自量 傷人之語還是自傷 含血噴人先汚其口)”하여 남을 해치는 말을 하게 되면 이는 곧 자신을 해치는 것과 같음을 경계해 주고 있다.

‘침묵은 금이다’하여 입 닫고 살 수도 없는 세상, 말로 인한 분쟁이나 화는 피할 수 없을 듯하다.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소송만이 살 길이다’하여 상대를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는 그 비용과 절차 그리고 무엇보다 소송기간 동안 입을 상처를 생각하니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주역에서 송사를 풀이하는 송괘에 보면 “소송은 오래해선 안 되니 일찍 끝내면 조금 구설수는 있으나 그것이 끝내 길한 일이다(初六 不永所事 小有言 終吉)”하여 송사를 가급적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마지막 풀이가 더욱 재미있다. “소송에 승리하여 큰 보상을 받더라도 아침이 다하기도 전에 세 번이나 빼앗기리라(上九 或錫之鞶帶 終朝三褫之)”하여 송사를 통한 승리는 사실상 패배와도 같다. 그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가급적 송사를 통하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송사를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중재(仲裁)’이다. 갈등의 대부분이 말에서 비롯되는데 그 말을 중재하는 기관이 언론중재위원회라 할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러한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음은 분명 자랑거리이자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제도로 보인다. 대다수의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지만 그 ‘법’은 서민에게는 가까이하기엔 아직 먼 존재이고 그렇다고 억울하고 분한 이 마음을 안고 가기에는 가슴이 너무 아프고 쓰리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화병’이라 하지 않는가.

‘중재(仲裁)’는 분쟁의 사이에서 화해를 시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두 글자를 살펴보면 ‘중(仲)’은 버금, 가운데의 뜻이 되고, 재(裁)는 마름질하는 뜻이니, 곧 두 사람의 가운데를 잘 마름질하여 화해시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중(仲)’에는 ‘백 살 먹은 쥐’의 뜻도 함께 있다. 쥐는 1, 2년밖에 살 수 없는데 백 살 먹은 쥐가 재단하고 마름질 하였으니 그 웃은 분명 예술의 경지에 필적할 수 있을 것이다. 장자(莊子)의 제물론(齊物論)에는 “상대방이 그르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하고, 상대방이 옳다고 하는 것을 그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밝은 지혜로서만 할 뿐이다(欲是其所非而非其是, 則莫若以明)”하였으니 중재는 밝고 지혜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사건들이 있으니 우리는 이를 ‘미제 사건’이라 부른다. 미제(未濟)라는 말은 주역에서 유래되었다. 주역의 64괘의 맨 마지막 괘가 바로 화수미제(火水未濟)괘이다. 미제란 아직 강을 건너지 못한 상태로 일이 해결되지 않음을 말한다. 이 괘의 마지막 글귀에 보면 “술을 마시는데 민음을 두면 허물이 없거니와 머리를 적시면 민음에 옳음을 잃을 것이다(上九 有孚于飲酒 无咎 濡其首 有孚 失是)”하였다. 사건이 끝끝내 해결되지 않았다면 술을 마시며 스스로 즐겁게 거쳐해 남은 미련과 앙금을 털고 서로 화해를 해야 허물이 없어진다. 그렇지 않고 분한 마음에 방자하게 술을 마셔 여우가 강을 건너다 머리를 적시는 것 같이 하면 옳음을 잃은 것이 된다는 뜻이다.

말은 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 여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말이나 글을 통해 발생하는 여러 분쟁과 갈등 등을 밝고 지혜롭게 ‘중재’를 통해 마름질 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최선의 방안이 되리라 본다.



김 성 수
(부산보훈병원 한방과장)

하반기 재·보궐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발족



상반기 재·보궐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8월 27일자로 업무를 종료한데 이어 오는 10월 27일 실시되는 하반기 재·보궐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8월 28일자로 설치됐다. 재·보궐 선거 기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심의위원장에 양삼승 위원(63.변호사)을, 부위원장에 박기동 위원(53.변호사)을 각각 선출했다. 하반기 재·보궐선거 기사심의위원회는 11월26일까지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객관성 여부를 심의한다.

“조정절차에 일정한 강제력 부여해야”



언론중재위원회 양재규 변호사(조사팀장)는 지난 1일 열린 민사조정법 시행 2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제3세션 “민사조정의 전망과 과제”에 토론자로 나선 양 변호사는 조정에 강력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발제자의 주장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절차의 경우 현실적으로 양 당사자의 위치가 동등하지 않고, 조정의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조정절차에 일정한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3면)

언론 조정·중재신청서 양식 변경

지난 6일 열린 제5차 운영위원회에서 언론조정중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언론 조정·중재신청서 양식이 변경되어 9월 7일자로 시행되고 있다. 기존 신청서에는 피신청인 란에 대상 매체의 제호만을 기재하도록 했으나, 새롭게 변경된 신청서에는 피신청인을 명확하게 특정하기 위해 피신청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 대표자 명, 주소 등 인적사항을 매체명과 함께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프레스센터 승강기에 캠페인 상영



언론중재위원회가 입주해 있는 한국 프레스센터건물 승강기 내에 중재위원회 캠페인 동영상인 지난 16일부터 상영되고 있다. 지난 해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되어 지상파 방송등에 방영되었던 이 동영상은 언론중재위원회의 도움으로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0년 정기세미나 개최 예정

언론중재위원회 2010년도 정기세미나가 11월 5일(금) 14시 30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된다. 한국조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의 주제 및 발제자는 아래와 같다.

대주제: 언론조정중재제도와 ADR기본법 제정방향

○제1주제 행정형 ADR과 언론조정중재제도

발제 : 정남철 (숙명여대 법대 교수)

사회 : 장현우 (서울제1중재위원, 변호사, 대한변협 교육이사)

○제2주제 가칭 ADR 기본법의 제정방향과 선결과제

발제 : 정준영 (서울제4중재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회 : 장현우 (서울제1중재위원, 변호사, 대한변협 교육이사)

8월말 현재 조정신청 1,660건

사건 처리현황

SEPTEMBER, 2010 VOL. 123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2010년 8월까지 모두 1,660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처리결과별로 살펴보면 조정성립 464건, 조정에갈음하는결정 104건(동의 83건, 이의 20건, 계속 1건), 조정불성립결정 94건, 기각 105건, 취하 889건(피해구제 710건), 계류 4건이며 피해구제율은 81.5%를 나타냈다. 피신청인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뉴스서비스가 7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신문 390건, 신문 376건, 방송 116건, 뉴스통신 29건, 잡지 19건, 기타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재위원회는 8월까지 60건의 중재사건을 접수하여 59건의 중재결정과 1건의 기각결정을 내렸다. 청구권별로는 정정청구가 32건, 반론청구 25건, 추후청구 2건, 손해청구 1건으로 나타났다.

시정권고 현황

시정권고소위원회는 2010년 8월까지 모두 7차례의 회의를 열어 자체 심의한 언론보도 중 총 171건의 법익침해 내용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살자 신원공개 124건, 피의자 신원공개 19건, 마약 용량·용법 공개 4건,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형사사건 피해자 신원공개·사생활 침해가 각 2건, 기타 법익침해가 18건이며,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99건, 일간지 50건, 뉴스통신 10건, 주간지 10건, 월간지 2건이다.

2010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의결 현황

2010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출범하여 8월 27일까지 91일간의 활동을 마치며 총 5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선심위는 정기간행물 159종을 자체 심의한 결과 총 9건의 선거기사에 대해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조항 위반 7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위반 2건이며, 결정내용별로는 경고문 게재 1건, 경고 7건, 주의 1건이다. 재심청구는 1건이며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상담 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2010년 8월까지 1,783건을 상담했다. 상담 처리결과로는 조정절차 안내가 1,35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가 178건, 타기관 안내가 161건, 재상담 예정 101건, 법적절차 안내 65건, 자제종결 33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매체유형을 살펴보면 일간신문 630, 인터넷뉴스서비스 629건, 인터넷신문 595건, 방송 344건, 주간신문 272건, 뉴스통신 6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2010년 8월까지 모두 91차례의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대상 기관별로 보면 교육연수기관 37건, 언론사 17건, 대학 10건, 지자체 9건, 인턴십프로그램 8건, 공사기업 3건, 기타 7건 등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전시회 개막식 참석

권 성 위원장(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은 지난 14일 ‘신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신문 가치의 재발견을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한 이번 전시회 개막식에는 권 성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성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배인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이동화 서울신문 사장,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참석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참석

장현우 위원(서울제1중재부, 변호사)은 8월 30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2010년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참석했다. 대한변협 교육이사를 맡고 있는 장 위원은 “최근 도래한 전 세계 법조계의 급변에 우리 법조계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 2010 변호사대회를 기획,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주간’ 선포식 참석

안중배 위원(경기중재부,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사진 맨오른쪽)은 지난 6일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열린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이하 아인세)’ 주간 선포식에 참석했다. 아인세 주간은 인터넷 상에서의 사이버 질서정립을 위한 캠페인으로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으며, 인터넷과 관련된 7개 정부부처와 포털 및 민간단체로 구성된 범국민협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했다.



‘전래놀이 들여다보기’ 출간

김길소 위원(강원중재부, 한국전래오락연구소 소장)은 2010년 춘천 세계레저총회 및 경기대회를 맞이하여 「전래놀이 들여다보기」를 출간했다. 사라져가는 전래 놀이에 대한 내용이 문답형식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희귀한 놀이 관련 그림과 자료들이 컬러사진으로 수록되어 있다.



‘한러관계사의 연구현황과 한러관계 증진의 길’ 세미나 토론회 참석

김창희 위원(전북중재부, 전북대 정치외교학과교수/ 사진 맨 왼쪽)은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한국정치외교사학회와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공동 주최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한러관계사의 연구현황과 한러관계 증진의 길’ 세미나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 이의 심사위원회’ 외부 심사위원으로 선출

권범 위원(제주중재부, 변호사/ 사진 오른쪽)은 지난 8일 제주지방경찰청이 도민 참여수사를 위해 운영하는 ‘수사 이의 심사위원회’ 외부 심사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 위원 5명과 수사 간부 4명으로 구성된 ‘수사 이의 심사위원회’는 경찰 최초로 경찰수사 과정에 민간인을 참여시켜 오류 여부를 심의, 의결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기구이다.

정리 : 김민정(홍보팀)

■ 언론중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7조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준사법적 독립기구로,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쉽고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조정·중재 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 신청 대상 매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등),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포털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 신청절차

① 신청기간

조정·중재의 신청은 대상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② 신청인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은 물론 일반단체나 회사, 공공기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방법

- 신청서를 직접 작성 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정·중재신청서는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 담당직원에게 신청 내용을 직접 진술하는 것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메일,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등 전자문서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번호 02)397-3000, 3010, 3100

e-mail counsel@pac.or.kr

홈페이지 www.pac.or.kr

주소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5층 (100-750)





바른후보, 공정한 언론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이런 일을 합니다.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일,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불공정 보도라고 판단될 경우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 등의 게재 또는 권고, 주의, 경고 등의 결정을 내려 공명정대한 선거보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010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기사 심의위원회는
8월 2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운영됩니다.



불공정 보도로 인한 선거후보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기사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 의결하여 시정요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 등의 게재 또는 경고, 주의 등의 결정을 내리고, 시정요구 사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각하, 기각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선거후보자와 언론사의
반론보도청구회부사건을 심의합니다.

선거기사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정당의 경우 중앙당)는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후보자나 언론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인용 또는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